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2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55호)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69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9호)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90호)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8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52호)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66호)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4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8.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II. 검토의견	16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16
2. 검토의견	54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김남근의원안(2217542)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20인
- 2) 제안일 : 2026. 3. 17.
- 3) 회부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김승원의원안(2217555)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3. 17.
- 3) 회부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허 의원안(2217569)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허 의원 등 14인
- 2) 제안일 : 2026. 3. 18.
- 3) 회부일 : 2026. 3.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김승원의원안(2217549)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3. 17.
- 3) 회부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허 의원안(2217590)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허 의원 등 14인
- 2) 제안일 : 2026. 3. 18.
- 3) 회부일 : 2026. 3.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김남근의원안(2217548)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20인
- 2) 제안일 : 2026. 3. 17.
- 3) 회부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4조).

또한, 현행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김승원의원안(2217552)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2) 제안일 : 2026. 3. 17.
- 3) 회부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8.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허영의원안(2217566)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2) 제안일 : 2026. 3. 18.
- 3) 회부일 : 2026. 3.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항·제51조제2항 신설 및 제5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김남근의원안(2217543)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20인
- 2) 제안일 : 2026. 3. 17.
- 3) 회부일 : 2026.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에서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남근 의원안(17542)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 (이하 이 장에서 “조사등”이라 한 다)를 받는 자는 다른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85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 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u>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u>제81조제1항제3호 또는</u> <u>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u>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 ----- -- <u>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 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u>

현행	김남근 의원안(17542)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u>1천분의 3</u>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는 ----- ----- ----- ----- ----- ----- 조사등에 응하도록 ----- ----- ----- ----- -----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 ----- -- 제50조, 제53조 및 제85조의 2-----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하도급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5)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설></u>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5)
제25조의3(과징금)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5조의3(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u>
④ <u>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⑤ <u>제1항 및 제4항의 -----</u> ----- ----- -----.
제30조의2(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u>	제30조의2(과태료) ① <u>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에 해당</u>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5)
계는 <u>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u>의 경우 1억원 <u>이하</u>,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u>이해관계인의 경우</u>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u>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 ⑧ (생략)	<u>하는</u> ----- ----- <u>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u> ----- ----- <u>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업자</u> ----- ----- -----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가맹사업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허영 의원안(17569)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 설></u>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허영 의원안(17569)
제35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제35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② ~ ⑥ (생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 ----- -----

현행	허영 의원안(17569)
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항 · 제9 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 까지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 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 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 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③ ~ ⑧ (생략)	----- 제81조부터 제85조까 지-----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제1 호, 제1호의2-----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49)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설></u>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49)
제35조(과징금) ①·② (생략) <u><신설></u>	제35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 ----- ----- ----- -----.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생략)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49)
③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④~⑥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③ ----- ----- ----- -----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 -----. ④~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 ----- 다음 각 호----- ----- 1 억원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49)
<u>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u> <u>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u> <u>물건을 제출한 자</u> 5.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② ----- 제1호-----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1.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49)
<신설> ③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u>제1항제5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u>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u>같은 항 제2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④ ~ ⑥ (생략)	는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u>제1항제1호 또는 제2호</u> ③ ----- <u>제2항제1호</u>----- ----- <u>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u>----- ----- <u>제1항제2호</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대리점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허영 의원안(17184)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설></u>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	허영 의원안(17184)
제25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제25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현행	허영 의원안(17184)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	② ----- ----- ----- ----- -----제80조부터 제85조-----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 ----- 5천만원 이하, 제2호----- ----- ----- ----- ----- -----제3호----- ----- -----. <삭 제> <삭 제>

현행	허영 의원안(17184)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 6. (생략)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1. ~ 3.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 ---- 제1호----- ----- 제2호----- ----- - 제4호----- ----- -----.

현행	허영 의원안(17184)
<신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신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신설>	4.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남근 의원안(17548)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설></u>	법률 제2131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현행	김남근 의원안(17548)
② (생략) 제34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u>
② ~ ④ (생략) <u><신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	김남근 의원안(17548)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 ----- ----- ----- -----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9항 및 제11항--.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u>사업자·사업자단체</u>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표시광고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2)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생략) <u><신설></u>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2)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② ----- ----- ----- ----- ----- ----- -----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및 제11항-----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 ----- 기피한 ----- ----- ----- ----- -----.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2)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②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	김승원 의원안(17552)
<신설> ③·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u>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u> 2. <u>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방문판매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생략) <u><신설></u>	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② (생략) 제51조(과징금) ① (생략) <신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1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②·③ (생략) ⑤ (생략) <신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 ----- ----- -----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및 제11항-----.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u>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제66조(과태료) ① <u>사업자·사업자단체</u> ----- -----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할부거래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u><신 설></u>	제41조의2(이행강제금)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u>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제42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2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⑤ (생략)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u><신설></u>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u>제6항 및 제9항</u>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u>자</u>	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6항, 제9항 및 제11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자(법인은 제외한다)</u>

현행	허영 의원안(1756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u>자</u> 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u>자</u> ③ ~ ⑧ (생략)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 자(법인은 제외한다) 12. ----- ----- ----- ----- ----- 자(법인은 제외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 먼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신설되는 안 제81조제1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등을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조사등’은 ①이 법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석이나 의견청취 등을 요청받는 것(제81조제1항제1호), ②이 법 시행을 위해 원가 및 경영상황의 보고,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일시보관의 명령(제81조제1항제3호), ③이 법 시행을 위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것(제81조제2항), ④자료나 물건 조사 시 지정된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것(제81조제3항), ⑤자료나 물건 조사 시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임직원에게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것(제81조제6항)을 포함함.

- 또한, 제85조의2를 신설하여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매출액의 1%(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제86조에서 제81조제11항에 따른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등에 응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5%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천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현행 제86조제1항1)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을 확대하고, 그 한도도 크게 상향하는 것임.

□ 다음으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법 제81조를 준용하는 하도급법 제27조제2항2)에 따라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의 과징금과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신설을 고려하여 종전에 부과하던 과태료의 상한 금액은 완화함.

1) 제86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방문 판매법·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법 제81조를 준용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제1항³⁾, 대규모 유통업법 제38조제3항⁴⁾, 대리점법 제27조제2항⁵⁾, 전자상거래법(법률 제21312호) 제39조제2항⁶⁾,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⁷⁾, 방문판매법 제57조제2항⁸⁾, 할부거래법 제47조제2항⁹⁾에 따라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의 1%(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의 과징금과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5%(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신설을 고려하여 종전에 부과하던

-
- 3)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 4)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③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 5)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83조부터 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7)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8)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9)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과태료의 상한 금액은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조사 절차로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조사권 남용금지, 조사 연기신청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 현행 공정거래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¹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응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벌칙, 과태료와 같은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먼저, 제86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회의의 결정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3%(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10)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또한, 제124조제1항제13호¹¹⁾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5조제6호 및 제7호¹²⁾에서는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제13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대상자가 사업자, 사업자단체, 동일인 등인 경우 1억원,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 한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불응에

11)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규정만 두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방해에 따른 제재 대상은 5개 사업자로 현장조사 불응 3회, 출석거부 2회, 자료 미제출 1회의 위반행위가 관찰됨.

<최근 5년 간 조사 방해 제재 사례>

건명	위반 행위	제재 유형	제재 수준
화물연대 건 (2023. 1. 17.)	현장조사 불응	고발 (단체)	1심 무죄→2심 진행 중
원명해운 건 (2022. 4. 11.)	출석거부	과태료 (개인)	200만원
애플코리아 건 (2021. 3. 30.)	현장조사 불응	고발 (개인·법인)	불기소
		과태료 (법인)	2억 원 ¹³⁾
	자료미제출	과태료 (법인)	1억원
세아베스틸 건 (2021. 2. 5.)	현장조사 불응	고발 (개인·법인)	법인: 벌금 1억원 개인(3인):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벌금 2천만원
현대제철 건 (2021. 2. 5.)	출석거부	과태료 (개인)	(3인) 각 2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3) 현행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억원인 데 반해, 애플코리아에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구(舊)공정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것임.

제69조의2(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집행은 위반행위에 관한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규명이 핵심인데,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 집행 전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행 제도는 조사 불응에 대하여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그 부과액이 적고, 일회성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반복적·조직적 조사 방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정안은 조사 불응 행위 자체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한 내 조사 협조를 재차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협조를 강제하는 실질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둘째, 주요 경쟁 당국의 집행방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사 제재 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이 있음.

주요 경쟁 당국은 조사 협조 의무 위반을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니라 법 집행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개정안이 참고한 EU의 경우 조사 거부, 자료 은닉, 허위 응답 등에 대하여 전 세계 일일 매출액의 최대 5%를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으로, 최대 1%를 제재금(fine)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 셋째, 피조사자의 조사 지연 전략을 억제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증거 인멸 방지의 효과를 가져옴.

14) EU Regulation 1/2003 Article 23 Fines

1. The Commission may by decision impose on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fines not exceeding 1 % of the total turnover in the preceding business year wher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 (a) they supply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response to a request made pursuant to Article 17 or Article 18(2);
 - (b) in response to a request made by decision adopted pursuant to Article 17 or Article 18(3), they supply incorrect, incomplet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do not supply information within the required time-limit;
 - (c) they produce the required books or other records related to the business in incomplete form during inspections under Article 20 or refuse to submit to inspections ordered by a decision adopted pursuant to Article 20(4);
 - (d) in response to a question ask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2)(e),
 - they give an incorrect or misleading answer,
 - they fail to rectify within a time-limit set by the Commission an incorrect, incomplete or misleading answer given by a member of staff, or
 - they fail or refuse to provide a complete answer on facts relating to the subject-matter and purpose of an inspection ordered by a decision adopted pursuant to Article 20(4);
 - (e) seals affix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2)(d) by officials or other accompanying persons authorised by the Commission have been broken.

Article 24 Periodic penalty payments

1. The Commission may, by decision, impose on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periodic penalty payments not exceeding 5 % of the average daily turnover in the preceding business year per day and calculated from the date appointed by the decision, in order to compel them:
 - (a) to put an end to an infringement of Article 81 or Article 82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a decision taken pursuant to Article 7;
 - (b) to comply with a decision ordering interim measures taken pursuant to Article 8;
 - (c) to comply with a commitment made binding by a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9;
 - (d) to supply complete and correct information which it has requested by decision taken pursuant to Article 17 or Article 18(3);
 - (e) to submit to an inspection which it has ordered by decision taken pursuant to Article 20(4).

사업자는 조사에 비협조함으로써 자료 확보를 지연시키거나 증거 인멸 시간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개정안은 피조사자가 신속하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경제분석 및 위법성 입증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낮추고, 증거 인멸의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을 극대화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우려됨.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의 방법과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서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벌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피조사자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료 제출 전까지 매일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으며,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조사 불응에 관한 제재 수단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⁵⁾

한편,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의 부과수준도 비교적 높게 설정하고

15) 예를 들어,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46조, 방문판매법 제67조, 할부거래법 제5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있는데, 과징금을 살펴보면, 다른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반해, 조사 불응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사 불응은 절차상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의 이행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사실상 제재나 처벌에 가까운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개정안은 EU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만 차용하였을 뿐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에 관한 EU 규정은 간과한 것으로 보임.

예컨대, EU의 경우¹⁶⁾ 피조사기업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EU 집행위원회(EC)가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고, EU는 이를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준비하여 피조사기업에게 제공해야 함(자료접근권).

또한, 피조사기업이 자료접근권을 행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방어권 행사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EU 집행위원회(EC)에 비공개

16) 이하 EU의 사례는 아래의 문헌을 참조하였음.
김문식, 「EU 경쟁법의 이해」, 박영사(2022), pp. 199~208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고, EU 집행위원회(EC)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조사 부서(경쟁총국)로부터 독립된 청문관(Hearing Officer)에게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할 수 있도록 피조사 기업에 대한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공문도 ‘법 00조 00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조사목적이 간략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피조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¹⁷⁾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집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결정되고 피조사기업에게 그 결정문이 통지되어야 하며 조사결정문에 적시된 조사대상과 그 범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됨.¹⁸⁾

이처럼 우리나라와 EU의 제도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EU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규정만을 차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음.

- 셋째, 개정안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통상분쟁의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봄.

17) 박준영,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70집(2020. 7.), p.346

18) 박준영, 위의 글, pp. 347~355

예컨대, 2025년 11월 미국 비영리기관인 NBR(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¹⁹⁾이 발간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집행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정성적 증거 및 분석’ 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의 기준이 매우 낮고 임의적이며, 명확한 위법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일 익명 신고만으로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비판과 함께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사소한 경영상 결정(예: 수익성이 낮은 거래나 관계를 종료하는 행위)과 같은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²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 제81조는 조사의 요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경쟁 당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19) 1989년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애틀과 워싱턴 D.C.에 소재함.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특성을 갖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중심적이거나 기업에게만 친화적이라는 비판도 있음.

20) Nigel Cory, "Understanding the Impact of KFTC Enforcement on U.S. Firms: Qualitative Evidence and Analysis," report (Seattl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ovember 2025), pp. 2-10